[회의록]**제192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73차**

1. 회의일시: 2023년 11월 09일(목) 오후 12시 30분

2. 회의장소: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활동실(조합 3층 內)

3. 회의참석: 박준영 부이사장, 김은주, 차윤정, 김유미, 강숙임, 장태선, 김선기,
천혜란, 김종희, 양종천, 김소민(이상 이사, 총 11명)
배 석 : 신승훈 전무
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8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192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12시 30분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10월 12일(목) 제191차 이사회 전차회의록를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가 논의안건 및 보고안건을 보고하다.

- 차기 이사회는 12월 7일(목) 오후 1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다.

7. 논의안건

□제1호 의안 : 2023년 10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**제58조(사업의 이용)**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2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
4.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
5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
7. 조합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)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.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.거소.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
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**10월 신규 조합원(12명, 9명(가구원))** : 권혜란(이주호), 김희진(이상수, 이수희, 이수진, 이대석), 최운식(김선옥), 김경옥(김영래, 김도현), 이연호, 안주희, 노명희, 김용숙, 이석중, 권요셉(강수정), 최점순, 이외남
- **(10월 기준) 신규 조합비 조합원(191명)** : 명단(별도 첨부)

 신규 합계 203명(세대) /

 ***총조합원수 : 5,515명 = 5,312명(9월 말 기준)+신규 203명(10월)**

- 이상의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2023 대의원 송년회 및 간담회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제191차 이사회, 제3호 의안 “제4기 대의원 간담회 추진의 건” 의결 사항
- 11월 24일 오후 7시로 일정을 확정하고 장소는 찾아보기로 결정함.
- 송년회를 겸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송년회때 추진 경과보고와 경험, 느낌 등을 나누는 시간과 대의원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다루자고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일시 및 장소 :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, 상지대학교 민주관 1층
- 송년회 및 간담회 프로그램 일정 확정

-> 결정 사항 : 송년회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함.
조합현황보고에 있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더불어 지역위원회(춘천, 원주, 충주) 활동 내용을 추가하고 발표키로 함.
대의원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부분은 포스트 잇 등 을 활용하여 준비·보강
세부적인 내용 및 아이디어 등 은 김유미, 차윤정 이사와 준비키로 함.
춘천, 원주, 충주 지역위원회 이사분들도 초대키로 함.

- 추가 의견 -

□제3호 의안 : 2023 원주 사회적경제 임원학교 프로그램 확정 및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참여하는 임원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비중 있게 다루기로 함.
- 임원프로그램 기획은 김선기 이사가 맡는 것으로 하고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장동성 트레이너 자문을 받기로 함.
- 주최는 강원의료사협이 주관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하는 것으로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- 2023 원주 사회적경제 임원학교 프로그램(안) (별첨)

-> 결정 사항 : 원주사회적경제 임원학교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준비 진행하고
감마비전수립워크샵은 강원의료사협 중심으로 준비 진행키로 하다.
구체적인 계획안은 12월 이사회때 안건으로 올리고 1~2월 중에 진행키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재택의료, 노인장기요양법 등 실무적인 내용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.
4~6시간, 1day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.
이론과 실제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.

□기타 논의 안건

- 제안 내용1 : 대의원 추가 선출 논의의 건(자료 별첨)

-> 결정 사항 : 대의원 추가 선출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되어 정관, 대의원 선출 규정 등 을 검토하기로 하다.
검토 등을 거쳐 세부적인 안은 12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다.

- 제안 내용2 : (가칭)조합원 자녀 대상 지역의료인학교 추진의 건(자료 별첨)

-> 결정 사항 : 예산을 배정하고 여름방학,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전국의 의료사협과 생협(한살림, 두레생협, 아이쿱) 등 의대, 간호대생 자녀를 둔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여 진행하기로 하다.
김유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사무국과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서 명

의장 박준영

이사 김은주

이사 김유미

이사 차윤정

이사 장태선

이사 천혜란

이사 강숙임

이사 김소민

이사 김선기

이사 김종희

이사 양종천